

제 21대 4.15 총선

낙천·낙선운동 선거혁명 국민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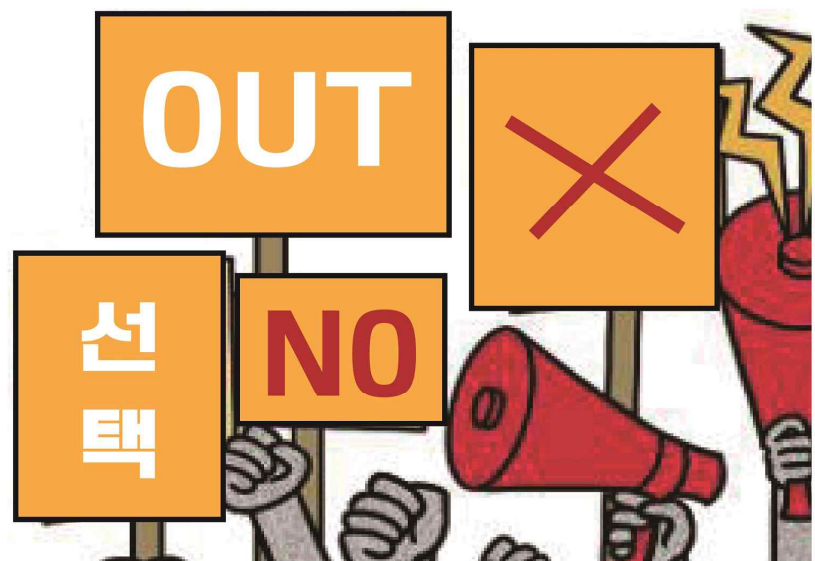
발대식 및 토론회 &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2월 21일(금)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공군학사구국동지회, 공정사회국민감시단,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나라지킴이교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수호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바른사회시민회의,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의정감시단,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시민정치회의, 자유연대,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 등 애국단체(가나다 순))



[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13:30~14:00	등 록	
발대식 14:00~14:30	사 회	■ 이 창 호 (공군학사구국동지회 회장)
	개 회 사	■ 김 일 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장)
	환 영 사	■ 이 석 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경과보고	■ 박 준 식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총장)
	취지와 목적	■ 김 석 우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대표)
	선언문 낭독	■ 김 인 해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 ■ 이 유 진 (자유연대 청년대표)
토론회 14:30~16:00	좌 장	■ 박 인 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14:30~15:40 각 10분	[제1주제] 국가정체성 바로세우기 ■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중복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제2주제] 국가안보 바로세우기 ■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외교안보의 가치와 기준” ■ 고성균 (전 육군사관학교장) “국방안보의 가치와 기준”
		[제3주제] 경제와 역사 바로세우기 ■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이념” ■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 “올바른 역사·올바른 교육”
	토 론 15:40~16:00	■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기자회견 16:00~16:30	발표 · 질의응답	■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대표단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방안 및 추진계획”
16:30~16:40	폐 회	

[목 차]

발 대 식

-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취지와 목적
김 석 우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대표) ----- 7
-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선언문
김 인 해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 이 유 진 (자유연대 청년대표) ----- 9

발 제

- [제1주제] 국가정체성 바로세우기
 -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
김 주 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 13
 -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김 태 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23
 - 종북(從北)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손 광 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 27
- [제2주제] 국가안보 바로세우기
 - 외교안보의 가치와 기준
이 용 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 33
 - 국가안보의 가치와 기준
고 성 균 (전 육군사관학교장) ----- 37
- [제3주제] 경제와 역사 바로세우기
 -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이념
조 동 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47
 - 올바른 역사 · 올바른 교육
강 규 형 (명지대학교 교수) ----- 57

취지와 목적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취지와 목적

2020. 2. 21

- 김석우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대표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취지와 목적

대한민국은 큰 변혁의 갈림길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면서 건국의 정통성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계승·발전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전체주의 북한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갈 것인가의 결정적인 국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전자는 성공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면 후자는 망국(亡國)의 역사를 천추의 후세에 남기는 회한(悔恨)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4.15총선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날입니다.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국강병(富國強兵)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만드는 민의의 전당을 새롭게 세우는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꽃은 바로 중국과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와 국민투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이하 4.15총선연대)’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마땅히 물러나야 될 위정자들을 선별함과 아울러 제21대 국회에 발도 붙여서는 안 되는 몃쓸 정치후보자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읽고 두려워하며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신성한 입법 의무를 성실히 펼칠 수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15총선연대 선언문에 우리의 뜻과 명분을 담았습니다. 4.15총선연대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을 여야 구분 없이 국민의 명령으로 낙천 및 낙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사익과 당리당락을 앞세워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國格)과 품위를 실추시킨 자들을 더 이상 국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사익보다는 국익과 공익(公益)을 앞세우는 자, 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 바로고 정직하며 균형과 조화라는 치국(治國)의 도를 펼칠 수 있는 자, 민심을 근본으로 여기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나라의 발전과 자유통일을 위해서 미래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 제21대 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국회, 민생국회, 가치국회, 비전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415총선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선거혁명의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언문 낭독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선언문

2020. 2. 21

- 김인해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
- 이유진 자유연대 청년대표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선언문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과 헌법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헌법 제7조(①항)과 제46조 그리고 국회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지위남용 금지 의무, 그리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4.15총선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신성한 의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 있는 의무임을 우리는 명심한다.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자들은 지금이라도 지체없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에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들을 대상으로 낙천 및 낙선운동을 온 힘을 다해 펼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하나. 자유민주주의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들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는 자로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유린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거나 토지국유제 도입 등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주의자들과 사회주의적 경제질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에서 활동한 자로서, 미전향 주사파(NL) 및 혁명적 사회주의자(PD)를 자처하거나 인정받는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남북연방제를 주장하거나 9.19남북군사합의를 주도한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탈원전 찬성, 사드배치 반대, 북한인권 외면, 4대강 보 해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FTA 체결 반대 등 중대한 국가이익을 훼손한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부정부패한 자, 병역과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거짓과 위선, 동성애 찬성, 미투 등 파렴치한 행위로 사회정의와 공정을 해친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발제

제1주제 국가정체성 바로세우기

- 김 주 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 김 태 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손 광 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

김 주 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21대 총선이 4월 15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최대의 정치사건이 될 것이다. 1945년에 해방된 뒤 3년 동안의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정치세력들은 체제선택의 문제로 목숨을 건 대결을 마다하지 않았다. 체제선택의 갈등은 국제정치의 역학에 따라 민족분단을 초래하였고, 건국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6.25라는 참혹한 국제전쟁으로 비화하였다. 잊혔던 체제전쟁이 70년이나 지나서 최근에 시대착오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수호하려는 정치세력과 파괴하려는 정치세력 사이에 일척건곤의 체제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천하를 다투는 피어린 체제전쟁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할 수 있을까? 총선에서 패배하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4.15총선의 의미를 새겨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경세방략을 짚어보자.

1. 21대 총선: 지나간 체제경쟁, 다가온 체제전쟁

왜 우리는 요즈음 시대착오적인 체제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동안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선진강국과 어깨를 겨룰 시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는 복고적인 체제전쟁을 다시 치루게 되었는가?

1-1 체제경쟁

6.25전쟁은 무승부로 끝났다. 한반도는 다시금 남북으로 나뉘어 체제경쟁이 시작되었다. 전후복구의 체제경쟁에서는 북한이 이긴 듯싶었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GDP가 남한의 GDP보다 1971년도까지 높았다. 일본에서 북송되었다가 탈출한 재일교포의 증언에 따르면 1962년도에도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62년도의 북한 GDP는 남한 GDP의 3배나 되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북한인민공화국과 본격적인 체제경쟁을 시작하였다. 수출주도 경공업중심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1962년에 시작하여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1971년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드디어 북한의 GDP를 넘어섰다. 국민소득증대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던 것이다. 여세를 몰아 제3차·제4차 경제

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1987년의 대한민국은 GDP 3,500달러의 중진국가가 되었고, 새로운 국제물결을 주도하는 민주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인 1988년의 서울올림픽은 공산국가들과 치른 체제경쟁에서 최종승리를 선언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서울의 화려한 모습이 올림픽 프로그램의 TV화면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다. 이를 보고 놀란 동유럽의 시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왔던 공산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바위처럼 버티던 동유럽국가들과 구소련이 힘없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우방과 공산권이 벌였던 총체적인 체제경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역사적인 아이러니라면, 세계적인 체제경쟁을 종식시킨 대한민국에서 체제전쟁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87년의 민주화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민주세력과 노동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좌파 민주세력이 연합하여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가 회복되자 자유우파의 민주세력과 사회좌파의 민주세력은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정당정치의 틀 속에서 분열된 자유우파세력과 사회좌파세력은 처음에는 신사적인 정권경쟁을 벌였지만 점차 피어린 체제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1-2 체제전쟁

1990년의 3당 통합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뒤이어 1997년의 DJP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만하여도 정권경쟁은 신사적으로 보였고, 좌우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끄는 양날개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사파 386에 둘러싸인 노무현 정권에 들어오자 우익의 날개를 존중하던 좌익의 날개는 아벨을 죽이려는 카인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흑역사로 만드는 혁명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정권에서 전통적인 흑백의 증오문제를 해소하려했던 진실과 화해의 정책과 달리, 일방적인 진실로 전체적인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역사바꾸기의 혁명적인 정책이었다.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흑역사의 국가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체제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최대 표차로 집권한 보수우익의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바로잡지 않고 실용정부를 내세웠다. 실용정부의 중도통합론은 체제전쟁을 유보하는 유화정책이었다. 취임하자마자 한미FTA반대 촛불시위로 당황했던 이명박 정권은 사회통합정책으로 주사파 혁

명세력의 체제도전을 해소하려 하였다. 고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좌우익지식인들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좌우익 정치세력의 상호화해를 도모했다. 이로 말미암아 노무현 정권이 “대못을 박듯이” 정치·사회·문화영역에 심어놓은 386 운동권 인사들은 아무 탈 없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들은 이명박정권을 숙주로 삼아 무력무력 자라났다. 그람시의 진지전이 공공연히 전개되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오자 체제불안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좌파진지의 해체작업을 시작하였다. 취임 초 2013년 10월에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해 수정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였다. 2013년 11월 5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409일 만인 2014년 12월 19일에 헌정사상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이 선고되었다.

국가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조치는 정치·사회·문화의 광범한 영역에 구축된 진지에서 웅크리고 있던 386 운동권 세력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진지에 숨어있지 않고 과감하게 진지 밖으로 뛰어 나와 적극적으로 기동전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2014년 4월 16일에 터진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세월호추모집회를 끊임없이 열어오다가, 마침내 2016년 10월 24일에 JTBC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태블릿 PC를 공개하자 대규모 기동전을 펼쳤다. 몇 개월에 걸쳐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 집회는 점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운동에서 퇴진운동으로 결국 탄핵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박근혜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곧바로 사법권과 언론을 장악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언론노조를 통하여 지상파 방송과 주요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합법적으로 사법권과 언론을 장악하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전 정권 인사들을 ‘숙청’하였다. 숙청작업이 어느 정도 완수되자, 작년 12월에는 고위공무원 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절대권력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켜 장기집권의 기반마자 닦아놓았다.

이제 체제전쟁은 막바지에 와 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패배하면 주사파정권은 곧바로 개헌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유사전체주의국가로 만들 것이다. 올 7월 공수처가 설립되면 3권이 통합된 절대권력이 탄생하고, 공수처를 발판으로 주사파정권은 개헌헌법에 따라 피비린내 나는 사회혁명을 추진할 것이다. 4.15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4.15 총선에

서 자유우파의 최소목적은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 40%확보이고, 최대목적은 정국운영권을 거머쥘 수 있는 의석수 과반확보이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면 최소한 4년 동안은 대한민국체제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정국운영권을 쥐게 되면 여세를 몰아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여 체제전쟁을 유리하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 하면 자유대한민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2.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낙천·낙선 운동

자유우파는 중도통합론과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단연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히 깨닫고 이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철저하게 격퇴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사파와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사파의 공격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격파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들의 행적과 발언으로 드러난 반(反)대한민국적인 얼굴을 국민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4.15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

자유우파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해왔지만, 그 요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종종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한계와 약점에 대한 좌파의 지적에 주눅이 들어 좌파의 정책적 입지를 받아들이는 유화정책을 추구하였다. 지난 2월 17일에 창당한 미래통합당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1년 만에 “자유”의 가치를 당명에 회복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좌클릭을 주도했던 새보수당 인사들을 받아들이면서 또다시 “자유”를 당명에서 빼고, 미래통합당이란 아리송한 이름으로 “보수중도” 통합을 표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는 정치세력과 “자유”를 지키려는 세력 사이에는 중도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자유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정치세력의 대결장에서는 중도가 존재할 수 없다. 일도양단의 결전상황에서는 주사파가 아닌 한 모두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본원적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수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적인 가치를 천착해보자. 이러한 본질 가치를 전제로 낙천·낙선운동의 공격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이다.

2-1. 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

현대 정치제도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라고 일컫는다. 특히 최근 서양에서는 “민주주의”는 곧바로 현대의 대의정치제도를 가리킨다. 대의정치제도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인데, 이러한 혼합정치제도는 19세기 말부터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으로 불려왔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한 뒤 현대 정치제도는 통칭해서 “민주주의”로 불리게 되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상원연설에서 ‘자유’를 빼고 간단하게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전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뒤에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였다. 전후에 건국된 소련의 위성국가들은 자신들의 공산정치체제를 인민민주주의로 불렀다. 그들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모범으로 삼고 자유진영의 대의민주주의와 구별하였다. 물론 그들은 아테네의 민주주의와는 판판인 전체주의 정치체도를 운영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용어혼란이 일어났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동부유럽의 공산국가들과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서양에서는 민주주의라면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민주주의라면 서양에서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모두 가리키는 중성적인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동양의 여러 공산국가에서 국명에 민주주의를 넣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베트남은 베트남민주공화국, 라오스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부르고 있다.

주사파세력은 개헌헌법초안에서 “자유”를 빼고자 했다가 실패하였고, 중고등교과서에서는 아예 우리나라를 “자유”를 뺀 ‘민주주의’국가로 일컫고 있다. 주사파세력이 집요하게 “자유”를 빼고자 하는 까닭은 전통적인 좌파의 용어혼란전술 때문이다. 서양에서 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니까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일반인들의 언어감각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현대정치제도의 존재이유인 “자유”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주사파들은 과도한 이념공세라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이고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이므로 민주주의란 말을 중성적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사용의 두 층위를 혼돈시키는 또 하나의 용어혼란전술인

셈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자유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을 가리킬 때에도 쓰이는 용어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 안에서 사회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을 가리킬 때 쓰인다. 따라서 정치체제를 가리킬 때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쓸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체제를 문제로 삼을 때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의도를 숨기려는 위장전술인 셈이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권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일 수 있는 권리,’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남과 약속하거나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것이다. 자유주의는 이러한 자유권이 우리 모두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졌다고 여기고, 국가가 준 것이 아니므로 중대한 이유 없이 간섭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신조인데, 17세기에 들어와 정치원칙으로 성립되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는 자유가 없다는 말인가? 민주주의에서도 자유가 있다. 민주주의의 자유는 정치공동체의 정치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민주적 자유에는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성인남성의 가장이 정치적 자유를 누렸다. 여성과 노예는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이므로, 이론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만 정치적 자유를 누린다. 다만 역사적 발전단계가 미숙하게 평가된 사회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농민, 뿌띠 부르주아지 및 지식인에게 정치적 자유가 부여되었다. 여타 계급의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와 우호계급이 지배하는 정치제도인 셈이다.

자유는 성격도 다르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불가침 불가양의 자연권이지만,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국가가 부여한 사회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국정여건에 따라 인민의 자유권을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보장이 안 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의 자유권을 국가가 중대한 이유없이 박탈하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유권은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현대정치체제에서는 자유의 가치가 민주주의 가치보다 선

행한다.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국가는 독재국가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비자유민주주의는 공산전체주의의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주사파 정치세력은 한국의 정치제도를 자유민주주의로 이해하지 않고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는 독재와 전혀 다른 좋은 정치제도로 묘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군사정권과 싸우면서 이룩한 “민주화”의 신화를 이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유사전체주의를 받아들이도록 용어혼란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면 “자유”의 본원적 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주장했거나 주장하고 있는 후보자들을 낙천 또는 낙선시켜야 한다. 이 범주에는 전향하지 않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나 주사파운동권인사도 포함되고, 국가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후보자도 해당될 것이다.

2-2.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제도

사회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자유롭다고 강변한다. 재산소유의 자유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평등은 자유로운 삶을 앗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재산소유권은 17세기에 성립된 자유권의 하나인데, 재산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고대나 중세사회에는 자유로운 삶도 없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재산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공산권에서 누가 자유롭게 살았겠는가? 공산당원이 그나마 자유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언제 수용소로 끌려갈지 몰라 전정궁궁하지 않았던가? 설령 그들이 자유로웠다하더라도, 그들이 누린 것은 특권이었지 평등한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사유재산권은 자유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원천이다. 로크는 생명, 자유, 토지자산을 모두 재산이라고 불렀다. 재산(property)이란 ‘그 사람에게 속하는 가장 마땅한(proper) 것’이란 뜻이다. 아담 스미스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 자신의 노동은 그대로 모든 재산의 기초이므로 가장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The property which every man has in his own labor, as it is, the original foundation of all other property, so it is the most sacred and inviolable.)”

로크는 생명과 자유를 재산항목에 넣었고, 아담 스미스는 제1의 재산은 바로 자신의

노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노동력이 제1의 재산이 되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에 노예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다. 자유인들만이 자신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근대 자유주의가 탄생하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소유할 수 있었다. 모두가 자유인이 되었던 것이다.

사유재산권은 이렇게 자기소유권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기소유권이 자연권인 한 사유재산권도 자연권이였다. 자신을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모두들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계약의 자유이다. 그러려면 모두 마음껏 말할 자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자유롭게 여행하고 이사할 자유 등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기소유권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누릴 자유가 태어난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기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부인한 것이다. 자유와 소유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념이 자유주의철학의 거장인 존 스튜어트 밀에 들어와 희미해졌다. 그의 대표작인 자유론에는 자유를 절대시하면서도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그렇게도 강조했지만, 그러한 자유는 사유재산권에 기초한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같은 시대의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가 자유를 앗아간다는 고답적이고도 시대착오적인 신념을 설파하기까지 하였다.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부인하면 자유시장경제가 위축되거나 파괴된다. 그러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곧바로 빈곤사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양심의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 그러기에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려는 정치세력은 독재주의자나 전체주의자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주사파 정치인들은 “토지 국유화”나 “부동산 공유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신성한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계약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제도를 지키려면 이들을 모두 가려내어 낙천·낙선운동을 해야한다.

2-3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현대정치제도의 구성요소인 공화주의의 정치이념이다. 현대정치

제도는 근대정치제도에 보통선거로 민주주의가 통합된 정치제도이다. 근대정치제도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혼합된 대의제공화정이었다. 18세기 영국은 군주제의 탈을 쓰고 있는 공화국이라고 루소는 평가했으며, 미국의 건국아버지들은 자신들이 만든 정치제도를 공화국으로 불렀다.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을 보장했고 미국은 수정헌법으로 자유권을 보장했다.

공화주의란 본래 고대 로마의 공화정을 모범삼고 있다. 라틴어로 공화정은 *respublica*라 하는데, 여기서 *res*는 ‘물건’이나 ‘사태’를 뜻하고, *publica*는 ‘국민의’를 뜻한다. 따라서 공화국이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말한 *government of the people*이다. 민주주의는 *government by the people*로 볼 수 있다.

공화주의의 문제의식은 권력을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사유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권력이 사유화되면 국민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지 않고 권력자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된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액톤 경의 말대로 절대권력일수록 절대로 부패하게 마련이다. 권력을 권력자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것이 바로 고대 로마인들이 고민했던 문제이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다수결로 정치결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소수자는 다수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수결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전원일치제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인민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책결정을 한다.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김정은이나 시진핑같은 독재가가 맨 먼저 수첩을 들어 올리며 의시표시를 하면 뒤이어 모두 따라한다. 만장일치는 결국 독재자 한사람의 뜻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만장일치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독재자에게 바치는 정치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갖게 마련이다. 이런 현실에서 만장일치제는 독재가 아니고서는 수행될 수 없다.

고대 로마인들은 명확히 깨달았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권력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로마정은 군주정과 귀족정 및 민주정을 혼합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정치제도였

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권력단위마다 일정한 규범을 지키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었다. 그러기에 법치주의는 인치주의가 갖고 있는 권력의 사유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안된 정치원칙이었던 셈이다. 군주정, 귀족정 및 민주정은 인치제도이다.

고대의 공화주의 정신을 근대정치제도로 실체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몽테스키외와 미국의 건국아버지들이었다. 그들은 삼권분립과 대의제를 구상하고 그것을 공화국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성문헌법이나 보통법을 정치운영의 근간으로 삼는 법치주의를 정착시켰다. 그런데 최근 주사파 정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개념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정치신념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검찰을 통제하고 모든 부서의 고위공무원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는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압박하면서 민주통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주사파 정치인이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자였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법치주의나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정치적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주사파 정치세력은 본질적으로 법치주의나 삼권분립에 관심이 없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정치의사를 무조건 실현하려는 권력의 화신들이다. 고위공무원법 죄수사처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검찰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감추지도 않는다. 만일 연동제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4.15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패배한다면, 이들은 공수처라는 절대권력을 발판으로 권력독점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전체주의 독재가 대한민국을 삼킬 것이다.

헌법 제1조에서 선언된 공화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후보자는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유사전체주의로 이끌 것이다. 공화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다.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후보자들은 모두 유사전체주의자들인 셈이다. 공수처법안 주도하거나 검찰을 협박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일일이 가려내어 낙천·낙선운동을 해야 한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김 태 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변호사

1.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이를 ‘기본질서’로 선언하고 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등, 판례집 13-2, 383, 400).

또한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헌재 2014. 12. 19. 2014 헌다1 결정).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결정 등).

사법기관은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하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권력분립 원칙의 한 축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과도 같은 본질적 속성으로 삼고 있다. 사법기관의 운영은 물론, 구성에서부터 헌법절차에 따라 그 원리가 관철되어야 헌법원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완성된다. 그래야만 법치주의 실현의 최후보루인 판단기관으로서 신뢰와 존중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그 핵심적인 요소인 재판의 공정성, 형평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해 결국 헌법에 합치되는 법치주의가 효과적으로 수호될 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권력분립제도도 허물어지게 된다. 결국 국민의 주권은 유명무실화되어 크게 훼손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전체적으로 허물어지게 된다.

2.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적폐청산’과 ‘국정농단’의 기치 아래 행하고 있는 여러 조치가 우리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가. 문 대통령은 2018. 9. 13.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를 통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유례없는 대규모 먼지털이식 수사와 재판으로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러나 그 수사에 착수했던 사법 적폐 관련 판결이 모두 무죄로 나오고 있다.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현직 판사 세 명이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재판 개입 혐의를 받았던 판사도 무죄였다. 애당초 실체가 불투명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수사 시작도 전에 '헌법 파괴'라는 등 '유죄' 선언을 먼저 했다.

나. 또한 문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고¹⁾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던 사건들이 거의 예외 없이 무죄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방산 비리 척결"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가 나왔다. "뿌리를 뽑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수사도 갑질은 일찌감치 무혐의가 됐고 별건인 뇌물에 대한 재판도 무죄로 나왔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외압 의혹을 엄정 규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에서 2년 반 동안 세 차례나 수사를 받았던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통령이 인도 출장 중 현지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는 특명을 내린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도 군 수사단이 90곳을 압수 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전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았다.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나와 촛불집회를 진압하려 했던 것처럼 부풀렸던 사건이 이처럼 아무 실체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규명하라"는 초법적 지시까지 내렸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역시 아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하명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거나 충격을 받고 유명을 달리하는 비극도 잇따랐다²⁾.

3.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특정 성향의 법관(법원 내 특정연구모임 소속 또는 특정 변호사단체 소속)으로 다수 구성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있어 국회의 청문절차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된 재판관이 4명이나 있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초유의 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는 헌법상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합동행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강행한 것은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헌법상 최소한의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1)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2) 조선일보 2020. 2. 17.자 A31면

4. 문재인 대통령은 2019. 9. 9.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 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 법안을, 2020. 1. 13.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1월 8일 '1차 대학살' 검찰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인사를 감행했다.

5. 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인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헌법 제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탄핵사유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 1). 이 사건은 최고의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안이며 그 중대함이 내란·외환의 죄에 못지 않은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사는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미 수 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³⁾,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를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실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자 2016헌나1). 지금까지의 피고발인 문재인과 그 측근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나아가 4·15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선거에 개입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의 2심 선고가 석연찮은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시급하다 할 것이다. 국민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법조인들을 격려하고 기로에 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2016. 12. 9.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의 내용에 적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 9개 항목에는 법률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뇌물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2016. 11. 22. 헌 검찰총장이 포함되어 있는 당시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은 헌직 대통령에 대물적 강제수사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물론 나아가 대통령의 지배하에 있는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종북(從北)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손 광 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종북(從北)세력이란, 간단히 말하면 북한의 체제와 사상·이념 및 각종 대내외 정책을 추종하며 이를 실천하는 자들이다. 북한 세습독재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주체사상·선군사상·혁명적 수령관·유일사상(영도)체계-를 신봉하고, 북한의 각종 대내외 정책을 수용하여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과 외교관계에 있는 국가·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전체주의 세습독재정권의 이익을 실현하는 자들을 말한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 국가가 패망하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최초의 결정적 계기는 거의 대부분 내부 요인과 내부의 적(敵)에서 비롯된다. 종북세력은 한국사회 내부의 적이다. 북한정권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암적(癌的) 존재이다. 남북 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종북세력은 북한정권의 편에 서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외부의 위협 요인, 외부의 적들보다 훨씬 위험한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친북(親北)세력’이란 용어도 있다. ‘친북’은 ‘종북’보다 그 범주가 넓은 편이다. 친북세력이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분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하여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북한정권의 우리민족끼리 노선·정책 등을 수긍하고 호응하는 자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자, 즉 범죄자이지만 친북세력은 범죄자는 아니다. 다만 친북세력에 잠재적 범죄자가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다.

종북세력을 법적 영역에서 볼 때는 “①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 위반자 ②반국가단체·이적단체에서 활동한 자. ①②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전향하지 않고 북한정권에 이익을 제공하면서 각종 사회활동을 한 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체제, 사상·이념, 대내외 정책을 추종하기는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들도 종북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은 실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다. 또 북한의 체제, 사

상·이념, 대내외 정책을 추종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현실에서는 극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북이나 아니냐는 북한 세습독재정권을 이롭게 하느냐 아니냐가 보편적 기준이며,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전체주의 세습독재정권 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주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종북세력은 선출직, 임명직 관계없이 어떠한 공직도 맡아서 안 될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친북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 중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고, 단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분하지 못하고 민족적 감정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해 막연한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른바 ‘북한 퍼주기 논란’도 북한정권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종북세력이 있는 반면, 계속 퍼주다 보면 북한주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이들 중에는 북한 핵은 폐기되어야 하며, 협상 조건이 맞으면 북한정권이 핵을 폐기할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태도는 엄밀히 말해 ‘북한에 대한 오판’ 또는 ‘대북정책에서의 심각한 오류’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종북의 범주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입법 기능의 중대한 한 축인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국민과는 다른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판단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북세력도 낙천·낙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의원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 어젠다(agenda)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북한에 대해 정확한 관점과 충분한 지식, 해결방안 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국회법 제24조는 국회의원의 선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즉, 모든 국회의원은 ①헌법 제4조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②“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선서 규정은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낙천·낙선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을 옹호하며 그들의 이익을 실현한 자.
 - 예) 북한정권에 현금과 뇌물, 중요 정보를 공여한 자 등.
2.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국가이익에 反하여 북한정권을 추종하고 이익을 제공한 자.
 - 예) 김정은 대변인 역할, 2019 판문점선언 · 평양선언 주도자 등
3. 주체사상·선군사상·수령론(혁명적 수령관)·유일사상(영도)체계 등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며 북한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자.
 - 예) NLPDR(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 자. 미전향 주사파, 혁명적 사회주의자 등.
4. 북한인권문제를 세계인권선언(1948)의 범주에서 수용하지 않는 자.
 - 예)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 자,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반대한 자, 북한인권활동을 비판하고 방해한 자. 유엔 및 미국·일본·유럽·호주 등의 북한인권법 및 북한인권위원회 활동을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자. 북한인권문제를 속칭 ‘先개발 後개선’ 논리로 궤변을 전파하는 자 등.
5. 반미·친북 활동을 한 자.
 - 예) 북한의 대남전략을 비판하지 않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정권을 옹호한 자 등.
6. 북한의 핵 보유를 비판하지 않는 자.
 - 예) ‘통일이 되면 북핵이 우리민족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
7.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속칭 ‘우리민족끼리 협력’을 주장하는 자.

- 예) 북핵 해결 과정 미진입 상황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주장하는 자.

8. 기타, 남북한 교류협력 등 모든 남북관계에서 북한주민의 이익보다 북한정권의 이익을 고려하는 자.

발제

제2주제 국가안보 바로세우기

- 이 용 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 고 성 균 (전 육군사관학교장)

외교안보의 가치와 기준

이 용 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조건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 정체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며 이를 수호하는 데 헌신할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를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적들과 동일한 세계관, 역사관, 안보관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역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마땅히 그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는 국가이익은 물론 국가의 존립 및 국민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외교안보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국가안보와 양립할 수 없는 정체성과 정견을 가진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위험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구체적 대상자는 아래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일 안보협력 반대, 사드배치 반대 등 주장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사람.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지난 70년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이 나라 국가안보의 가장 핵심적 토대였고, 한국은 이를 토대로 북한의 부단한 대남 적화정책 및 파괴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무력 확장,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대남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토대로 하는 연합군사훈련, 한.미.일 안보협력, 미사일방어망 등은 우리의 안보 유지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 되고 있고,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종북세력과 연계 하여 이러한 대한민국 국방체계의 와해에 진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이러한 국가안보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헌법과 국회법 상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수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지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NLL 폐기, 평화협정 체결, 고려연방제 등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대남 적화통일 책략 차원에서 제기해 온 상투적 주장들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사람.

북한은 냉전시대인 1970년대부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무력 또는 비무력 수단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책략으로서 NLL 폐기,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집요하게 주장해 왔다. 지난 50년 간 냉전체제 종식과 공산진영의 와해를 비롯한 국제정세 급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북한의 주장과 대남적화 목표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음모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및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조치 등 대북한 압박공조에 반대하고, 유엔 결의와 국제적 규범에 반하는 대규모 대북한 경제지원과 협력사업 실시를 주장하는 사람.

북한은 2017년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이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유엔 제재조치 해제를 통한 ‘핵과 경제발전 병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재해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극소수 친북진영 국가 및 국내 종북세력과 연계 하에 제재조치 해제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비군사적 압박수단이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치된 의견이며, 이는 우리 국민 다수의 이견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의에 역행하고 유엔제재에 정면 위배되는 대북한 경제원조나 협력사업이 설 땅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를 주장하는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있다면 그 의도와 정체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민주화,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대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북한 망명자와 탈북자 보호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거부감을 표출하는 사람.

한반도 평화유지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민주화가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의무사항이다. 그와 동시에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 망명자와 탈북자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 잘 정착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국내 종북

진영의 주장에 편승해 이러한 당연한 국가적 의무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이에 반대하거나 편협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다섯째, 대중국 굴종정책과 주권포기적 3불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대중국 예속화와 속방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중국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반미, 반자유민주주의 책략에 동조하는 사람.

중국은 역사상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가장 오랜 세월 위협해 온 나라다. 삼국시대 이래 20회 이상 한반도를 대규모로 침략했고, 600년 이상 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한국을 속방으로 지배했다. 구한말에는 원세개를 조선에 파견해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고, 조선에 대한 영토적 야심으로 일본과 청일전쟁을 벌였으나 패한 바 있다. 한국전쟁 때는 130개 사단 135만 명을 파병하여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가로막은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가 결정적 계기에 이를 때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을 비호한 나라이며, 북한 핵미사일 저지를 위한 자위적 목적의 사드 미사일 배치에 극력 반대하고 이를 구실로 우리 기업에 대한 불법 제재를 자행하고 있는 나라다. 훗날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가장 강력히 반대할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을 혹은 이념적 이유로, 혹은 대북정책상 이유로, 혹은 사대주의적 이유로 흠모하고 굴종하려는 정체불명의 세력이 있다. 이 나라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듯한 대중국 ‘3불약속’은 그 대표적 사례다.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대중국 굴종정책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한국의 국가주권을 훼손하고 중국의 속방화를 재차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반일 민족주의를 국내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일감정 고취와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선동하는 사람.

인류 역사상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과 미주대륙을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가 외세침략과 식민통치를 겪었지만, 그 원한이 아직까지도 국가간 협력관계를 압도하고 파괴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사는 국가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어렵고 과거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사에 얽매어 현재와 미래의 국가간 협력을 포기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국내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반일 감정을 고의적으로 고무하거나 이념적 이유에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한일관계

악화를 선동하려는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있다면, 그 정치적 목적과 이념적 정체성이 엄중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 위의 여섯 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치적 지향점과 이념적 정체성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 정체성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엄중히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가치와 기준

고 성 균
전 육군사관학교장

2019년 10월 31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다음 날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업적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전쟁의 위협이 제거되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다.

아포리아는 ‘막다른 골목,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등을 의미하는 데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포리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방 분야는 9.19남북군사합의,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 우려 등으로 더욱 심한 ‘아포리아’다.

경제나 사회는 무너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국방은 어떠한가? 국방은 한 번 무너지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을 역사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과 관련된 사안에는 그야말로 정치적 의도나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국방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도하였거나 주장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며 낙천 및 낙선 대상자를 걸러내야 한다.

1. 9.19남북군사합의 체결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 이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였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전쟁이 끝났는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는가?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요란하며 오히려 자칭 남쪽 대통령은 북쪽으로부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이제는 남북, 미북간 대화마저도 단절된 참

혹한 상황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중 9.19 남북군사합의의 핵심은 ‘상호 간 적대행위 전면 중지’이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서해 평화수역 설치, 군사분계선 1km 이내 감시초소(GP) 제거, 5km 이내 사격훈련 중지, 서부전선은 20km, 동부전선은 40km까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다.

이는 휴전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없애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최전방 군사대비 태세를 약화시켜 유사시 상대적으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우리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즉, 북한이 핵무력이나 재래식 군사력을 전혀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일방적,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국방부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종 조치”라고 하며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고 전방 감시 초소(GP)도 파괴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심지어 비무장지대에 우리 장비를 투입하여 남북도로 연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대한 북한 반응이 없어 결국 남측 단독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해 발굴을 진행했다. 결국 9.19남북군사합의를 남측만 이행한 셈이어서 ‘남북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미 거짓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9.19남북군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북한의 태도와 과거의 전력으로 미루어 볼 때, 9.19남북군사합의 실천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정과 조치들은 대단히 선부른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스텔스기 도입을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F-35A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호크 전력화 행사도 몰래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며,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더 큰 위협을 만든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한미동맹 약화

2019년 10월 15일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 세미나에서 동맹에게는 동맹의 이익이 우선 시되며 이를 위해 동맹 각 국가가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 결정으로 동맹 관계에서 주권이 다른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나 현재 막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라고 하며 북한이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게 놔두면 안 되며 한미 양국은 주권과 공동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이는 미국이 현재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은 6.25전쟁에서 미군 사망자 총 5만4천260명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북한의 야욕으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잘 지켜왔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 경제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한미동맹은 최초의 ‘전통적 우호관계,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동맹 성격의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남북 화해 분위기에 휩싸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들이 많다. 그러한 결과가 2.28 미북 하노이회담 결렬 사전 미인지로 부터 한미 간 각종 외교 현안, 최근의 남북 관광 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위 ‘한미공조 균열’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미일동맹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고 그러한 맥락에서 앞에서 언급한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같은 주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3.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2014년 한미 간에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대 조건은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였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안전하려면 앞에서 언급된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 존망과 직결된 전작권 전환에 국가적 차원의 자존심이나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개입되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오늘날 북한은 재래식 전력과 핵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히려 2014년에 합의한 전환 3대 조건보다 더 구체적이고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하겠다는 시기에 집착하여 전환을 위한 조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미래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4.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은 북한의 오판을 막고 전쟁을 예방하는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그런데 2019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1992년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필리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잘 알다시피 필리핀 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나락으로 떨어진 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경제 또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쉽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이익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언사다.

5. 사드 배치 반대

‘사드 괴담송’을 아는가?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사드는 오래 전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배치하였다.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합당한 이유를 갖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혀 사실과 다른 전자파 괴담을 갖고 사드 전자파 관련 노래들을 부르고 춤을 쳤다. 소위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울긋불긋한 다양한 색깔의 가발을 쓰고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추면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고 장난스럽게 노래를 부른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경망스러운 행동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할 뿐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방위를 희화화, 형해화 하는 무책임한 행동의 극치이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1명도,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에 찬성을 했지만, 처음에 좌익세력의 거짓 선동에 부하뇌동하여 사드 배치를 집단적으로 반대하며 국가안위보다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망국현상을 보인 바 있다. 이들 또한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6.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해상 교통로 방어와 인근 해상의 경제·국방안보를 위한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핵심 사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장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2007년 기지 건설을 확정했다.

그러나 2011년 당시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당리당략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 일을 사과한다.”며 기지 건설 백지화를 약속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영혼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가?

“국민의 올바른 선택,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정부 당국자로서 국방분야에서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군이 국방목표인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국방 관련 입법 활동과 정부가 시행하는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가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 2항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주권 확보, 경제, 사회통합 등 국가이익의 여러 실체 중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바로 생존과 관련된, 즉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국가방위’이다.

앞에서 언급한 몇몇 사례에서와 같이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경우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뜻보다는 당리당락과 개인의 일신영달을 위하여 무책임하고 수준 낮은 언행을 하였다. 그런데 누가 그런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냈는가? 다름 아닌 우리 유권자들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아포리아로 만든 일정한 책임은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적어도 국방분야와 관련된 신념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당리당락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정하고 순수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후보를 우리 유권자들이 잘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 21대 4.15총선 국방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나 행동을 주도했거나 동조한 자를 낙천 및 낙선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대 4.15총선 국방분야 낙천 및 낙선 대상자

1.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을 주도하거나 동의한 자
2. 한미가 협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무시하고 ‘조기 전작권 전환’을 주도하거나 동조한 자
3. 한미동맹 약화 및 해체를 주장한 자
4. 미군 철수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자
5. 사드 배치 반대 및 동조자
6.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전력이 있는 자

발제

제3주제 경제와 역사 바로세우기

- 조 동 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강 규 형 (명지대학교 교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이념

조 동 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1. 정치는 경제의 울타리이기에 ‘평화가 경제이다’는 틀린 명제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낭만적 통일지상주의’에 빠진 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신(新)한반도 평화구상’인 ‘콰르버 선언’(2017. 7.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콰르버 선언은 헌법 4조와 충돌하고 있다.

콰르버 선언은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간 합의에 의해 통일이 이뤄진다”고 되어 있지만,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고수하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정착되겠는 가? 역사상 통일은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 정치변동’으로 ‘합의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통일의 지향점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의 향상이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여정은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 완성되어야 한다.

2. 2018년 ‘개헌특별자문위원회’라는 임의기구를 통해 개헌논의에 참여한 자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은 2018년 ‘헌법자문특별위’ 자문형식을 빌어 개정헌법의 시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헌특별자문위원회’는 임의기구로 국민은 동 기구에 ‘개헌안의 초를 마련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

프랑스헌법(제3조 1항)은 “국가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주권을 행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2항은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 기준에 따르면, 국체(國體)를 흔들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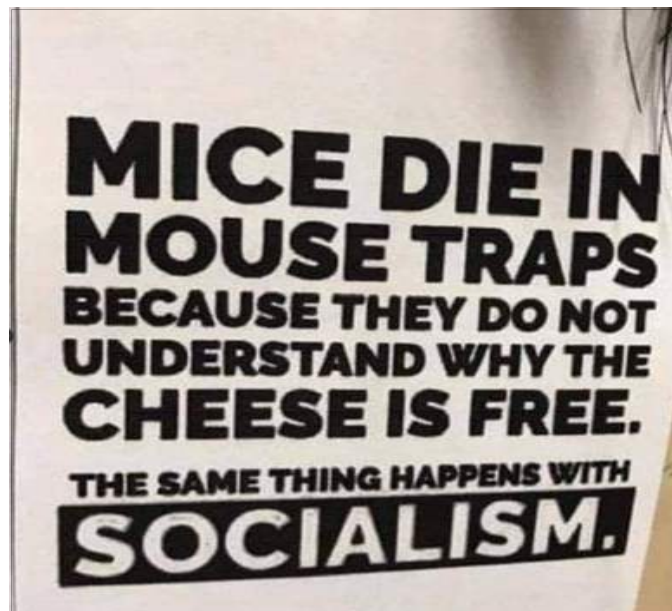
특정 세력은 2018년 개헌 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 시도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층위일 수 없다. 북한도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개헌자문특위는 ‘시장경제’에 반(反)하는 경제조향을 삽입하려 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반대 파업권’을 헌법에 보장하려했다.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은 올 스톱될 것이고,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뒤집혀진 운동장’이 될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반영하려 했다. 하지만 ‘동일가치 노동’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오용되면 조용필과 주용필(조용필 모창가수)의 출연료는 같아야 한다. 동일가치 노동 여부는 오로지 시장만이 판정할 수 있다.

자문특별위원회는 토지공개념 조항으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를 신설하려 했다. ‘특별한 제한’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토지공개념과 무관하다. 토지공개념을 채택하는 중국에서의 ‘부동산 광풍’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개헌자문특위가 시도한 ‘사회적 경제기본법 도입’ 및 ‘경제민주화 강화’는 시장경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3. 현금 살포형 무차별적 복지지출은 국민의 근로유인과 동기를 말살하고 정작 복지지출을 받아야 할 수혜계층의 복지 혜택을 줄인다. 이 같은 정책에 참여한 자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아래는 현금 살포형 무상복지 지출의 위험을 경계하는 촌철살인(寸鐵殺人) 포스터다.



거저 뿌리는 현금 복지도 쥐덫에 먹음직하게 올려 진 치즈일 뿐이라고 표현하면 과장일가? 복지라는 치즈를 먹은 사람은 죽지 않지만 그의 영혼은 황폐해 진다. 그는 근로유인보다 더 중요한 근로동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포스터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1800만원)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300만원), 서울시의 ‘청년수당’(300만원)과 ‘청년월세지원’(200만원),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21만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 정책들이다. 2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청년 한 명이 30대 후반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4,089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6조원에 달한다. 청년층 복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금 복지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청년이 취약계층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부터 해야 한다. ‘취업이 잘 안 된다고,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청년 복지를 늘리고 있는 것은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삶’ 만큼 공허한 주장도 없다. 국가가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국가에 기댈수록 국민의 삶과 인격은 황폐해 진다.

4.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지출 부정수급 방대한 정치 세력은 국민의 대표 자격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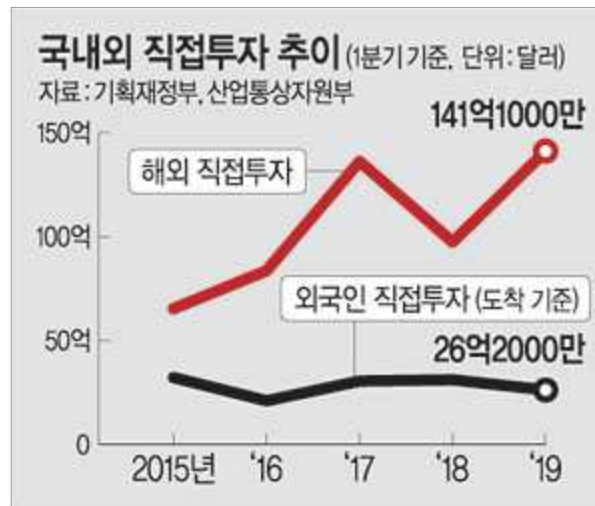
한 경제일간지 보도(한경 2월 7일자 A13면)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회사 측에는 해고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자도 자발적 퇴직자에게 “퇴직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해고 처리를 권유하는 사례도 등장한다고 한다. 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을 고용보험에 떠넘기는 범죄행위이다.

불법적인 실업가 횡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렸고, 상·하한액도 높여 ‘실업급여 매력도’를 올려놨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98억1500만원으로 전년(196억2100만원)보다 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앞 다퉈 지급하기 시작한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 도시 주민들이 값싼 농지를 사들이는 ‘무늬만 농민’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부정수급을 없애는 궁극의 방법은 복지 설계 자체를 새로 하는 것이다. 정밀한 수요 파악과 우선순위에 따라 엄정한 예산 배정 및 집행을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탈세 방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지만 복지 누수 방지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5. 거미줄 같은 규제를 만드는데 기여(조력)한 자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귀하라면 한국에서 사업하겠는 가. 기업이 등지를 틀기 어려우면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있다.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 같이 높은 법인세율, 반(反)기업정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그리고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려 하겠는 가. 기업이 등지를 틀기 어렵다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



‘2019년 1분기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018년 1분기(97억4000만 달러)보다 44.9% 늘어난 141억1000만 달러이다. ‘제조업 탈(脫)한국’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기업 옥죄기 정책’ 등으로 규제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도 급감하고 있다.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도착 기준으로 2018년 대비 15.9% 줄어든 26억2000만 달러이다.

6. ‘소득을 풀어 소득을 올리겠다’는 억지 논리가 소득주도성장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듯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고 여기에 목을 맨 자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이 인기를 끈 이유는 대중에 영합했기 때문이다. ‘성장이 분배를 이끄는 게 아니고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감언이설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겠다’는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



7. 최저임금인상을 선동했던 자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생산성이 높아져야 임금이 올라갈 수 있으며, 임금을 높여준다고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 가. 최저임금은 시장이 아닌 ‘정치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2017~2018년 최저임금은 29.1% 증가했다. 만약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 된다면” 그만큼 내 소득은 증가한다. 하지만 ‘고용된다면’은 가정법이다. 정책 효과가 ‘가정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내가 직업을 잃는다면, 다른 물가가 올랐다면” 내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기업주(고용주)가 마땅히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대중에게 오도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비정규직의 경우 직업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8. 정당한 적법 절차를 생략한 채 국민적 동의 없이 탈(脫)원전정책을 집행한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에너지정책 결정은 국가백년대계를 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라면 탈(脫)원전을 ‘탈원전공론화위원회’ 같은 임의기구에서 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여부는 국민투표로 정해야 한다.

한국형 원전은 세계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하는, 수출 주력산업으로 미래의 먹거리이다. 탈(脫)원전 후 전국의 산과 호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히고 카드늄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중국기업과 중국기업에 연결된 기업들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 가. 탈(脫)원전 정책 실패 시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9.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국민의 돈’으로 국가가 사기업(私企業)을 지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연금사회주의에 앞장 선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지침) 도입으로 ‘연금사회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는 피터 드러커가 1976년 『보이지 않는 혁명: 연금기금주의는 어떻게 미국에 왔는가』에서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정의한다면 미국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일갈(一喝)이 단초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23일에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 개입이 예고된 것이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99개, 10% 이상인 기업도 96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은산분리’를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는 ‘고객 돈으로 산업자본(재벌 총수)의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국민의 돈’으로 기업을 쥐락펴락 해서는 안 된다. 2019년 새해벽두를 달구었던 화두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경영권’ 참여였다. 그 일환으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쌈지 돈이다.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민 연금의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국민연금 운용자의 제1의 책무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면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순리이다.

10. 2분법적 시각에서 ‘강자 규제, 약자 보호 프레임’ 법률안을 양산한 정치세력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규제론자는 ‘강자 대 약자’의 2분법적 논리에 함몰되어 있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 위탁기업 대 수탁기업, 가맹사업본부(franchiser) 대 가맹점(franchisee)” 등을 ‘갑·을 관계’로 치환해 뚜렷한 경제적 논거 제시 없이 ‘갑이 을을 착취’ 한다고 추정하고 ‘갑을 규제하고 을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정의(正義)로 갈음해 왔다.

이 같은 정책 사고는 치명적 인식오류를 범하고 있다. “집단 내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며, 집단 간에는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경쟁의 단위는 종(種, species)이 아닌 개체(units)로, ‘종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의 이익’이 존재가능하면, 예컨대 굶주린 사자는 자신보다 더 굶주린 사자를 위해 얼룩말을 잡아먹지 말아야 한다. 얼룩말의 번식을 위해 인위적으로 사자를 몰아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사자의 빈자리를 늑대나 힘이 센 얼룩말이 채울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의 최대의 쟁점은 ‘기술유통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대기업)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기술유통행위의 피해자는 수탁기업(중소기업)이고 가해자는 위탁기업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맞은 사람이 아닌 ‘때린 사람이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 거증(舉證) 책임은 기소권자(검사)가 부담하며 입증을 못하는 경우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는 무죄가 된다. 상생법상 기술유통의 경우 형벌이 수반되는 전형적인 공법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기관인 중기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위탁기업을 옥조이면 위탁기업은 위탁·수탁 거래 대신 필요한 재화를 자체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거래를 통한 ‘분업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 위탁기업이 자체 생산 대신 거래처를 해외로 옮기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졌던 사업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

11. 2018~2019년 연속 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낮다. 2018년 한미 경제성장률은 2.9% 대 2.7%이며,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과 미국 각각 2.3% 대 2.0%이다. 그 차이도 벌어졌다. 증세를 외쳤던 자들은 국민경제를 꾸러갈 지식이 결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2018~2019년 연속해서 한국은 미국보다 느린 속도로 경제성장을 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2배이다. IMF외환위기, 메르츠 사태 등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국보다 저성장은 처음이다. 성장률 역전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세상에 이변과 우연은 없다. 한국과 미국은 다른 길을 갔다. 2017년에 한국은 증세를, 미국은 감세를 했다. 한국은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7% 인상시켰다.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은 좌파의 오랜 ‘버킷 리스트’였다.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것을 얻었으면 ‘날개를 달았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림에서와 같이 정반대였다. 급기야 2019년 1사분기에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했다. 그 후유증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에 머물렀다.

12. 에필로그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실패했다. 최근의 ‘저성장, 고용참사 그리고 기업 투자부진’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경제에 우연은 없다. 현상에는 본질이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을 경제실패에 이르게 한 ‘근원적 오류’는 ‘개인, 자유, 시장(성장)’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공동체, 평등, 통제와 계획’이 채웠다. 결국 ‘전체주의적 국가개입주의’로 실패 요인을 압축할 수 있다.

통렬한 자기 부정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부모 세대보다 못하는 첫 자식세대의 길을 연”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로 기록될 수도 있다. 실제 2019년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로 2018년 3만3400달러보다 감소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실패에 직간접으로 연관되었거나 부정적 의미에서 기여한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은 없다. 일각에서 국회의원에 귀속된 특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잿밥에 눈이 어두운 정치지망생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길이 국민에게 진정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라면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미제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와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질서로서 유일하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도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라고 설파했다. 그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투쟁에서 궁극적인 결말은 ‘무기’가 아닌 ‘사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또한 무기가 아닌 사상만이 궁극적으로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웅변했다.

4.15일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체제 전쟁’이다...//

올바른 역사 · 올바른 교육

강 규 형

명지대학교 교수, 현대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작년에 발표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試案)은 필자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어떻게 1980년대 대학가에 풍미한 철 지난 얘기들, 즉 좌파 수정주의 역사관이 그렇게 집대성해서 요약했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이 시안의 초안이 공개됐을 때인 올해 2월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고, 말 잘하기로 유명한 이낙연 총리도 대답을 잘 못하고 찢찢매다가 결국 이 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총리가 승인 안 하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며 시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끝났다. 하지만 그때 시안과 지금 시안의 차이는 “6.25가 남침”이라는 것만 들어가는 정도만 빼고는 다른 것이 거의 없다. 총리가 국회에서 식언(食言)을 했던가, 총리가 실세가 아니던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나. 총리의 의견을 며칠 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답은 자명한 듯하다.

사실상 역사 인식은 한 인간으로서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헌법기관임으로 그들의 역사 인식을 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원의 자질을 평가할 요인이다.

특히 그동안 많은 이들의 현대사 인식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북한체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도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선 엄밀한 사료비판을 통해 입증된 사실을 중심으로 명암과 공과를 균형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체제가 어려움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서술해야 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다양한 생각과 다원적인 가치를 포용하고 있다.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그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가 실종됐다. 즉 공통의 가치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건전한 역사관은 공통가치의 핵심요소이다.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로서의 역사관을 공유해야 한다.

첫째,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통성만큼은 인정하자. 시대착오적 오판으로 북한 공산사상인 주체사상(主體)을 동경했던 586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건국 직후의

대한민국은 불완전했고 상처투성이였다. 그러한 대한민국을 미화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이룩했다는 것에는 진정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시작할 때의 대한민국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 지금은 불완전한 부분을 많이 털어내고 완성된 국민국가를 향해 발전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이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에서 잘사는 나라 반열에 올라섰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도 변신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엔의 도움을 받아 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헌 헌법을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켜가는 현대사를 만들었다. 제헌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포용한 매우 선진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과 이 헌법의 의미를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의회 민주주의와 다당제에 기초를 둔 자유민주주의, 입헌주의(법치주의), 공화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와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문명사적 의의를 되새겨야 한다.

문제는 한국의 역사교육이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건전한 국가정체성 확립에 해가 된다. 한국 사회는 잘못된 역사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건전한 시장경제라는 틀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세계 어디에도 순수 시장경제 체제만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 혼합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은 건전한 시장경제로 삼고 있다. 공산주의 경제나 명령형 경제는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관의 유행으로 이러한 평가도 부정되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각론으로 들어가자면,

1.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체제의 의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48년 체제로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이 세워졌다는 것을 부정하고 48년체제를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 요즘 좌파학계 일각에서는 48년을 부정하기 위해 1919년에 편승해왔던 것도 잘못이라면서 1919년 임시정부까지 부정하는 경향도 생겨나

고 있다. 결국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공산계열이 중국공산당 군과 소련군 하에서 활동한 것을 정통성으로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기준을 삭제한 것은 이미 논쟁이 끝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려는 국사학계와 친북좌파 세력의 그동안의 끈질기고 지겨운 노력이 실체화된 케이스이다.

원래 이러한 국사학계의 한심한 오류는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의 의도적인 오역을 맹종한 결과였다.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은 ‘오역의 제국’(도리 2013)이란 저서에서 학술 오역의 대표 케이스로 리영희의 유엔결의문 오역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오역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오역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사학계와 친북좌파 세력들이 이 오역을 성경 말씀처럼 맹종했다는 것이었다. 리영희는 ‘한국논단’ 1991년 6월호에서 ‘이 정부가 Korea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한다’로 원문에 없는 ‘그 지역’(유엔감시 하에서 자유선거인 5.10선거가 일어난 지역, 즉 38선 이남-필자 주)을 넣어 번역해서 대한민국이 마치 38선 이남에서만 유일합법 정부인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파리 샤이요 궁(사요 궁이라고도 불린다. Palais de Chaillot)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공산권을 포함한 회원국 58개국 중 48개국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받았다(찬성 48, 반대 6, 기권 1, 결석 3). 대한민국은 역사적 정통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와 차별화됐다. 유엔결의문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가 이루어진 38선 이남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아울러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던 ‘두 체제’ 중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도 상당히 선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북한은 유엔감시도 거부하고 자유선거가 아닌 황당하기 그지없는 흑백투표를 자행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것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팩트이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자격이 없다.

3. 6.25 남침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격이 없다. 6.25는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의 치밀한 논의와 계획 후에 결행된 사건임은 이미 구소련의 문서들과 중국의 문서공개로 명백한 사실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남침 사실을 부정하고, 남침임을 인정해도 이것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국회에서 퇴출돼야 한다.

4.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폄훼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한 것을 경시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격이 없다.

한국 좌파이념의 뿌리는 민족해방혁명(NL)론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는 한국경제학계와 역사학계의 주류논리로 한동안 큰 위세를 떨쳤다. 요약하면 “남한은 일본식민지에서 미국식민지로 변한 것뿐이고, 아직도 봉건적 잔재가 남은 남아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민족경제론’이란 다른 이름으로 치장된 이 논리의 결론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이후의 한국사회경제의 진로는 다 비정상적인 일탈이기에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더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고, 종속적인 국가에서 더 종속적인 국가로 전락할 것이란 것이었다. 즉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가 시장경제체제에선 자립적 근대국가를 이루기가 불가능해서 민족해방혁명으로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런 주장과는 정반대방향으로 향했고 번영과 자립을 이뤘다. 이 진영의 이론적 대부였던 서울대 안병직 교수는 1980년대 중반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옥의 고통을 통해 “모택동주의자에서 자유주의자로 변신을 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자기 이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박현채 리영희 교수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지적인 진실성을 결여한 정신적 파산이었다. 모택동주의와 종속이론의 한국적 변형인 이 사이비 경제학의 주장은 결국 현실화되는데 실패했고, 결과가 증명되는 경제학계에선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이 사이비 이론은 한국사 등 관념론에 빠지기 쉬운 인접학문으로 전이돼 아직도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 국사학계의 한국근현대사 해석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또한 소위 운동권과 현재 야권의 가치관·세계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제학계에서 이 논리가 득세할 때 유일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곳이 서강대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한 “서강학파”였다. 남덕우, 이승운 교수를 중심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체제로의 적극적 편입을 통해 한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정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의 좌파경제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구의 첨단 경제이론으로 무장한 이들은 결국 1970~8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실제 경제성장 정

책을 주도했다.

이러한 팩트를 무시한 경제사관을 가진 이들도 국회의원으로서는 결격이다.

5. 최근 역사에 관해서는 너무 여러 이슈들이 있기에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보려 한다. KAL기 폭파사건이 한국정부의 조작이라고 믿는 자들.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사람들. NLL을 부정하는 사람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들. 기타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종북종중(從北從中)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국회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들임을 확실히 밝힌다.

[illegible]

[illegible]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 참여단체 -

공군학사구국동지회, 공정사회국민감시단,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나라지킴이교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수호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바른사회시민회의,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의정감시단,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시민정치회의, 자유연대,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 등
애국단체(가나다 순)

2020. 2. 21.